

프랑스 최초의 언론중재기관, 저널리즘윤리중재위원회(CDJM)

최지선 서강대학교 미디어융합연구소 책임연구원



I. 저널리즘윤리중재위원회(Le Conseil de déontologie journalistique et de médiation)

1. 저널리즘윤리중재위원회의 설립배경과 과정

프랑스의 <저널리즘윤리중재위원회(Le Conseil de déontologie journalistique et de médiation, CDJM)>는 지난 2019년 12월 프랑스 최초로 설립된 언론중재기관이다. 300여 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의 언론 역사에서 일부 언론사가 개별적으로 운영해오던 중재위원회가 아니라 여러 형태의 언론사(신문사, 라디오, TV, 디지털, 통신사 등), 기자, 미디어 이용자 대표 등이 모여 미디어와 공중 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중재하는 기관이 만들어진 것은 처음이다.

프랑스에서 언론과 미디어 이용자 간에 발생한 윤리적 문제를 중재하는 기관의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그 합의를 이루는 것은 쉽지 않았다. 1916년 최초로 스웨덴에

서 언론중재기관이 설립된 이래로 영국의 탈퇴 이후 현재 27개국으로 구성된 유럽 연합의 회원국 중 18개 국가에 관련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 유럽 연합(EU), 유럽 평의회(CoE), 유럽 안보 협력기구(OSCE) 등과 같은 국제기구의 언론중재기관 설립 권고는 프랑스에도 유사한 역할을 하는 기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었다. 이러한 주장에 힘입어 2007년 몇몇 언론인들에 의해 <프랑스 언론중재위원회 예고를 위한 협회(l'Association pour la préfiguration d'un conseil de presse en France, APCP)>가 설립되었고, 5년 후인 2012년 <정보윤리감시센터(Observatoire de la déontologie de l'information, ODI)>로 진일보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공공기관으로서의 중재기관 설립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프랑스 미디어 이용자들은 수 년 간 누적된 언론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언론의 윤리적 문제를 중재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다수가 동의하는 편이다. 2019년 프랑스 공영방송사 주도로 이루어진 조사에 따르면 18세 이상 프랑스인의 74%가 윤리중재기관의 설립에 동의하는 편이다(Hoog et al, 2019). 2018년 '노란조끼' 시위 당시 언론인들의 시위 관련 보도와 관련해 많은 시민들은 정부 입장과 시각에 맞춰 왜곡된 보도라며 크게 분노하였고, 언론을 향한 불신이 고조된 상태다. 심지어 언론인들에 대한 폭력 사태가 발생할 정도로 사안이 심각하였다. 당시 언론인과 미디어에 대한 강한 불신으로 프랑스인들은 언론인들을 '콜라보(collabos)'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이는 과거 나치에 부역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프랑스인들에게는 무척 수치스러운 표현이 아닐 수 없다(최지선, 2020). 이에 앞서 이른바 '가짜뉴스(fake news)'라고 불리는 허위 정보의 문제도 프랑스인들의 언론 불신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로이터가 발표한 <2019 디지털 뉴스 리포트>에서 나타난 프랑스인들의 뉴스 신뢰도는 24% 수준이었다(Reuters Institute, 2019).

정부 차원에서도 언론중재기관의 설립을 2014년, 2019년 각각 두 차례 검토하였으며, 두 보고서 모두 언론중재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언론인들의 합의 부족으로 설립이 쉽지 않음을 보고하였다. 오렐리 필리페티(Aurélie Filippetti) 문화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2014년 보고서는 "언론중재기관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언론인들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적인 공공기관 설립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Sirinelli, 2014). 2019년 초 마크롱 정부에서 다시 한번 언론인의 업무를 감독하는 윤리위원회의 설립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이 보고서 역시 언론의 신뢰 회복을 위해 언론윤리 감독 및 중재기관의 필요성은 강조하면서도 이해관계자들의 합의가 쉽지 않음을 보고하였다. 특히, 언론보도의 자유가 확실히 보장됨을 천명하지 않으면 언론인들의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하였다(Hoog et al, 2019).

관련 기관 설립에서 합의가 어려운 원인은 언론인이나 언론사들의 입장이 일치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된다. 한편에서는 미디어 이용자들이 정보 제공자들과 대화할 수 있는 창구의 필

요성을 인식하고 개별적으로 언론사별로 중재위원을 조직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 기사에 대한 검열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기자들과 언론사들도 적지 않다. 이미 ‘언론 자유에 관한 법률(Loi du 29 juillet 1881 sur la liberté de la presse)’을 통한 언론 피해에 대한 구제 방법이 있고, 언론 스스로 윤리적 문제를 감시하는 정보윤리감시센터(ODI)도 존재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특히 중재위원회 설립에 반대하는 언론인들과 언론사들은 두 차례나 정부가 관련 기관의 설립을 검토하였다는 것에 대해 큰 거부감을 드러냈다. 정부주도의 윤리중재위원회 설립으로 인해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라는 입장이다(Cassini, 2019). 언론인들과 언론사들은 “협회 운영을 위해 자금 조달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연간 1-200만 유로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며 이로 인해 주요 자금 지원의 주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나 언론사들로부터 위원회의 독립성이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Ducrot, 2020, 1, 16). 또, 언론 노조에서도 “언론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저널리즘윤리위원회가 아니라 언론인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근무 조건”이라고 말하며, “기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고용주 대표들과 함께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나”며 반발하고 참여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였다. 또한, 저널리즘윤리중재위원회에 빈번하게 회부된 언론사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는 벨기에의 사례를 들어 결과적으로 프랑스에서도 언론사에 대한 정부 지원의 축소에 대한 근거가 될 것이라는 걱정도 제기되었다(Ducrot, 2020, 1, 16).

결국 언론에 대한 신뢰는 나날이 낮아지면서도 언론윤리중재기관 설립에 관한 논의는 수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평행선을 그리는 가운데, 2019년 6월 세드릭 오(Cédric O) 디지털 담당수석이 “언론인들 스스로 허위정보와 맞서는 조직을 마련하지 않으면 정부가 나서겠다”(Le Monde avec Reuters, 2019, 6, 26.)고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면서, 여전히 중요한 주체 중 하나인 언론인과 언론사들의 합의나 지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약 6개월 뒤인 2019년 12월 정보윤리감시센터(ODI)를 계승, 발전한 형태의 언론인 자율규제 기관이자 윤리중재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저널리즘윤리중재위원회(CDJM)가 탄생하게 되었다.

2. 저널리즘윤리중재위원회(CDJM)의 목적과 역할¹⁾

저널리즘윤리중재위원회 설립의 가장 큰 목적은 미디어 이용자에게 대한 신뢰회복이다. 정보조작의 시도가 횡행하고 가짜뉴스가 늘어나는 시대에 접어들면서 언론은 공중으로부터 신뢰를 잃을 위협에 처해있음을 인정해야 하며, 저널리즘윤리중재위원회 스스로를 이러한 위협

에 대한 대응 중 하나라고 밝히고 있다. 저널리즘윤리중재위원회는 그 역할에 대해 소위 가짜뉴스에 대한 미디어 이용자의 질문에 응답함으로써, 정보와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있지만 정보가 아닌 것을 구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저널리즘윤리중재위원회의 두 번째 목적은 언론사와 언론인을 보호하고자 함이다. 위원회는 언론 기사나 프로그램에 대해 사후 심의 이외에 권력이나 로비가 사전에 개입하는 것을 거부하며 편집권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저널리즘윤리중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 미디어, 편집자 및 언론인, 공중 간에 언론 행위로 인해 발생한 분쟁이나 윤리 문제에 관해 중재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내규에 따라 미디어 이용자들이 언론 행위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면 이에 대해 일차적으로 언론인 및 언론사와 이용자 간의 의견을 전달하고 조정하거나, 이로써 해결되지 않는 경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최종 결론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저널리즘 윤리에 대한 공적 토론의 장을 제공한다.

둘째, 미디어 기업과 언론인 전문직 자율규제 기관의 역할을 한다. 전문가들의 자성과 협의의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즉, 언론인들을 위한 윤리적 권고 사항을 제시하거나 언론 윤리에 관한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 결정을 할 수 있다. 개별적인 중재 신청과 달리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언론 윤리와 관련된 문의나 요청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심의와 의견 생산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이 외에도 <정보 오류 수정 게시 가이드>와 같은 저널리즘 윤리를 적용한 실무용 가이드를 제작하거나 <저널리즘 윤리 헌장>, <디지털 콘텐츠 사실 확인 가이드>, <혐오 담론에 관한 유럽인권법원의 규정> 등 다양한 기관에서 발표된 저널리즘 윤리 관련 자료들을 게재하여 언론인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저널리즘윤리중재위원회는 설립배경과 그 과정에서보다시피 비록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정부 기관이 아니라 언론인들이 주축이 되어 자율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다. 특히, 기존의 언론윤리중재기관의 필요성에 힘입어 언론에서 생산한 정보의 질을 향상시켜 미디어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부정적인 언론인의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전직 언론인 중심으로 만들어진 프랑스 언론중재위원회 예고를 위한 협회(APCP)와 그 후속인 정보윤리감시센터(ODI)를 계승,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그 목적과 조직의 성격이 앞선 조직들과 유사할 수밖에 없다. 즉, 새롭게 중재기관의 역할이 추가되었지만 동시에 언론인, 언론사가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자율규제 기관의 기능도 하고 있는 것이다.

저널리즘윤리중재위원회는 징계나 처벌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상의 법정’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언론인, 언론사, 미디어 이용자 대표로 구성되며, 정치적 권력이나 경제적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자율적 결정을 하는 기관으로서 모든 시민들에게 열려 있는 기관임을 강조하여 공정성, 독립성, 개방성을 표방하고

1) 저널리즘윤리중재위원회(CDJM) 홈페이지(<https://cdjm.org/>)의 협회 소개 참조.

있다. 실제로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서 정부기관이나 행정기관이 아니며, 그 법적인 지 위 역시 공익 목적의 ‘비영리협회’이다.

II. 저널리즘윤리중재위원회의 조직 규모 및 운영 방식

저널리즘윤리중재위원회는 회원, 회원들 중 30명으로 구성된 이사회, 실질적 운영을 담당 하는 사무국으로 구성된다. 회원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개인 또는 법인인 활동 회원과 명예 회원으로 구성되는데, 활동 회원만이 총회에서 투표권을 갖고, 이사회 구성원과 심의 그룹의 위원이 될 수 있다. 명예 회원은 투표권이 없고 이사회 선출이나 심의위원이 될 수는 없지만,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회원의 규모에 대해 규정에 의해 정해진 바는 없지만 언론사 대표, 언론인 대표, 미디어 이 용자 대표로 크게 세 파트 동수로 이루어진다. 각각의 파트를 구성함에 있어 협회의 정관에 따라 대표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 자격은 개인 및 법인 모두 가능하며 다음과 같다.

〈표 1〉 저널리즘중재위원회의 위원 자격

언론인 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자 노조 • 지역별, 주제별 기자 협회 • 기자 협회 • 기자 개인
언론사 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쇄매체, 디지털 매체로 발행하는 언론사 혹은 잡지사 편집인 • 라디오, TV 방송사 • 통신사 • 편집인 노조 혹은 협회 • 편집인 개인
이용자 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주의, 대중교육,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등을 주제로 하는 시민단체 • 저널리즘 스쿨, 프레스클럽 대표 • 시민 개인의 자기 추천 • 위원회 가입 신청자로 사무국의 입회를 허가 받은 자 • 기자 개인, 전직 기자 혹은 편집인 출신, 기자 협회 가입자, 정치적 조직이나 해당 조직의 대표는 제외

위의 조건 이외에도 이사회는 회원 승인 시, 정관 6-5조에 따라, 인종적 혐오나 차별, 개인 에 대한 법적 침해로 처벌을 받거나, 이익 충돌, 정무직 혹은 정무직 후보자인지 여부를 가려 제한하도록 한다. 활동 회원들은 사무국과 총회에서 결정하는 일정 금액의 회비를 납입해야 한다. 회비 불납시 회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회비 불납 이외에도 회원의 사임, 사망, 법인



의 해산, 심각한 결격 사유로 사무국에서 자격취소를 결정할 시 회원에서 취소된다.

이사회는 각각의 파트에서 10명의 대표와 추가 대표 10명을 선출하여 총 30인의 이사와 30 인의 추가 이사로 구성된다. 이사회로 선출된 회원이 사임하거나 이사회에 반복적으로 출석 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추가 이사를 구성하는 것이다. 언론사 대표들로 구성된 언론사 파트와 달리 개인과 법인, 언론인 노조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 언론인 파트와 이용자 파트 는 특성에 따라 동수로 이사회에 진출할 대표를 선출한다. 예컨대, 언론인 파트에서는 언론 인 노조 중에서 5인, 기자 개인회원이나 다른 법인 중에서 5인으로 대표를 선출한다. 이용자 파트에서는 개인회원에서 5인, 법인회원에서 5인으로 선출한다. 이사회 구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이와 같이 구성된 이사회는 총 3년간의 임기 동안 활동하며 한 번 재 임이 가능하다. 이사회는 위원회에 제기된 중재 신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심의 그룹을 구 성한다.

사무국은 실무를 담당하기 위해 회장단 3인, 서기 3인, 재무 3인으로 이사회를 통해 각 파트에서 3인씩 9명을 선출해 구성한다. 각 파트간 세력 균형을 위해 회장, 서기장, 재무장을 각각의 파트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현재 회장은 언론사 파트의 회원이며, 언론인 파트의 회원 과 이용자 파트의 회원이 부회장을 맡고 있다. 서기장은 언론인 파트의 회원, 재무장은 이용 자 파트의 회원이 담당하고 있다. 사무국 역시 남녀 각각 최소 4인이 되도록 한다. 사무국의 9인 역시 3년간 활동하며 한 번 재임이 가능하다. 이외에 사무국은 급여를 받는 직원을 고용 할 수 있다.



이사회 활동, 사무국 활동, 심의 그룹 활동 등은 모두 자발적이고, 무급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회의 참석이나 관련 활동으로 인한 업무 손실 보상에 대해 2019년 12월 31일 정해진 금액으로 지불되며, 회의 참석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교통, 식사, 숙박)에 대해 상한 기준에 맞춰 보전을 해준다.

저널리즘윤리중재위원회의 기본적인 재원은 연례 총회에서 결정하는 연회비가 된다. 이 외에 유럽 연합,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타 기관이나 단체의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대출 등 법률에서 허용하는 기타 모든 자원 조달이 가능하다. 단, 보조금과 기타 모든 재원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위원회의 가치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공공 재원은 위원회 설립 초기 3년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연간 예산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

III. 중재절차 및 결정

1. 중재 신청, 절차와 결정과정

언론 활동/보도에 대해 중재와 윤리적 의견을 필요로 하는 16세 이상의 개인이나 법인이 실명으로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언론인, 혹은 중재 대상이 된 언론 보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이 중재 신청을 할 경우, 신청 내용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 저널리즘윤리중재위원회

자체적으로도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자체 신청에 의한 것임을 공개해야 한다. 중재 신청의 대상이 되는 언론 활동은 프랑스에서 프랑스 공중을 위해 편집이 이루어지고 발행 혹은 방송된 언론 보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언론 활동이 아니거나 발행되지 않은 미디어 생산물, 편집자의 선택, 미디어 콘텐츠 전체는 중재 대상이 될 수 없다. 가령, 트위터 게시물은 언론 활동에 해당되지 않아 위원회에서 다루지 않는다. 5월 22일 신청이 이루어진 역사 다큐멘터리에 관한 중재 신청 역시 방송법에 따라 '지식'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것으로 언론 활동이 아니라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청은 중재 대상이 되는 언론 보도가 발행, 방송, 게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신청자는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을 하며, 이메일 신청 시 위원회 웹페이지에 공개된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신청 내용에는 해당 언론사명, 해당 언론 행위의 발행 또는 방송 게시 날짜, 기사 제목 또는 프로그램명, 중재 신청 동기와 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하기 전에 해당 언론사에 연락을 취한 경우, 언론사의 응답 역시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이외에도 신청자가 자신의 주장에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문서를 첨부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접수가 된 중재 신청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을 한다. 위원회의 직원이 접수된 신청이 저널리즘윤리중재위원회의 역량 범위 내에 있고,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만일, 중재 신청 다음의 절차로 진행이 이루어질 수 없는 신청인 경우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 동일한 언론 활동에 대해 여러 번 중재 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는 여러 건의 중재 신청 중 하나에 특권을 부여하고 다른 신청자들에게 해당 중재 신청에 병합하여 참여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중재 절차의 대상이 되는 신청에 대해 위원회는 신청자와 해당 언론사에 연락을 취하고 합의와 조정을 제안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회 홈페이지에 양쪽 당사자 간의 연결과 중재 결과를 보고한다.

언론 보도에 대한 윤리적 심의와 의견이 필요하다고 유지되는 경우, 위원회는 이 사실을 해당 언론사 및 기자에게 15일 이내에 알리고, 언론사와 언론인으로 하여금 중재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한다. 이사회는 회원들에게 언론사, 언론인, 이용자 파트 중 각각 최소 한 명이 포함된 심의 그룹을 구성하여 심의를 진행하도록 한다. 단, 회원들 중 개인적, 직업적 이유로 이해 충돌이 있을 수 있는 경우 심의 그룹에 참여할 수 없다. 이 심의 그룹은 상대 파트를 존중하면서 신청자와 언론사, 혹은 언론인의 의견을 수집한다. 이들은 사무국 직원이나 외부 협력에 의존할 수 있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심의 후, 심의 그룹은 위원회의 결과 보고의 바탕이 되는 문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한다. 이 과정 중 사무국이 공개적인 토론을 위해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를 제

외하고 절차 진행 중인 중재 신청은 공개하지 않는다.

위원회는 실무 그룹의 심의 결과에 대해 각 파트별 위원 최소 세 명씩, 전체 위원 중 최소 12명 이상의 위원이 참석한 상황에서 합의를 이루어 최종 의견을 보고한다. 의견의 보고는 신청자의 주장에 대해 '성립', '불성립', '부분 성립'으로 표시된다. 사무국은 위원회의 의견을 사건 내용, 양쪽의 입장, 위원회가 참조하는 저널리즘 윤리 규정(1918년 언론인 직업 윤리 헌장, 1971년 언론인의 권리와 의무 선언인 '뮌헨 선언', 2019년 국제언론인연맹에서 채택된 언론인 헌장)의 관련 조항, 위원회의 분석, 의견 결정 방식과 그에 따른 최종 결론 등의 형식에 맞추어 작성한다. 때로는 소수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위원회는 결정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데, 그 이전에 당사자에게 결정 사항을 고지한다. 결정 내용을 공개할 때, 양측의 이름이 실명으로 공개된다. 단, 당사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직업적 상황을 위태롭게 하거나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을 막기 위해 익명으로 공개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견은 일반적으로 재검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관련된 양측 중 한쪽에서 초기 사건 신청 시 관련된 요소 중 알려지지 않았던 요소를 제시하며 재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사무국은 사건의 재검토를 결정할 수 있다. 이 때, 재검토가 게시되면 기존의 심의 그룹이 아닌 새로운 그룹을 구성하여 검토가 이루어진다.

2. 결정의 효력

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경제적 징계나 그 이외 제재 효력을 갖지 않는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을 위원회 홈페이지와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된다. 언론사 기명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의견이 게재된다는 점에서 다소 '망신주기'가 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나 제재의 효력은 갖지 않는다.

3. 최신 결정례

2022년 6월 8일을 기준으로 저널리즘윤리중재위원회는 출범 이후 540건(중복 포함), 개별 279건 중 69건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였다. 대략 한 달에 10여 건 정도의 새로운 중재 신청이 접수된다. 위원회가 발표한 최신 결정례 중 신청자의 윤리 문제 제기에 대해 '성립', '부분적으로 성립', '불성립' 결정이 이루어진 사례를 한 건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청자의 문제 제기가 '불성립'된 사례다. 프랑스 라디오 채널인 프랑스 앵테르(France Inter)의 2021년 11월 오후 1시 방송 중 유통기업인 모노프리(Monoprix) 로지스틱 플랫폼에 관한 보도에 대해 신청자는 광고와 구별되지 않는 언론 보도라며 윤리 문제를 제기



하였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위원회가 기준으로 삼는 세 가지 텍스트(1918년 언론인 직업 윤리 헌장, 1971년 언론인의 권리와 의무 선언인 '뮌헨 선언', 2019년 국제언론인연맹에서 채택된 언론인 헌장)를 바탕으로 보도 내용을 분석하여 언론인이 사실적이고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언론 보도가 광고적 성격을 가질 만한 긍정적인 표현의 내용이 없었다고 판단을 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2022년 1월 11일 심의회의를 통해 해당 언론 활동이 보도와 광고를 구별해야 한다는 윤리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결정하고, 해당 문제 제기가 윤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두 번째는 '부분 성립'으로 결론을 내린 경우다. 르 몽드(Le Monde)에서 2021년 9월 3일 보도한 '시진핑의 사상을 위한 중국 싱크탱크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국제관계전략연구소(Iris) 대표로서 연구소 소장인 파스칼 보니파스는 해당 기사가 '정확하고 진실된 보도에 관한 의무'와 '반론권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위원회에 문제제기를 하였다. 보니파스 소장은 연구소가 수차례 포럼에서 중국의 입장이나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사가 주로 참조한 국립군사학교전략연구소(Irsem)의 편향된 보고서에 기대어 국제관계전략연구소가 중국 정권의 프로파간다와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고, 기사나 언론사가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해 연구소나 자신에게 연락한 적이 없었다고 문제제기를 하였다. 또한, 소장은 이러한 기사에 대해 반론 기회를 요구하는 서한을 9월 29일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답변이나 설명도 없었고, 반론도 게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구소 측의 반론은 르 몽드가 2021년 11월 26일 웹사이트에서 게시되었다. 저널리즘윤리중



재위원회는 중재 신청이 접수된 후 르 몽드에 해당 신청 내용을 고지하였다. 르 몽드는 이에 대해 “국제관계전략연구소가 주최한 포럼들은 프랑스 주재 중국 대사관과 공동으로 개최된 것으로 그 역할이 당시 중국의 주요 외교 정책 중 하나인 ‘신실크로드’를 홍보하는 것이었고, 중국 대사관이 재정을 지원하면서 이 포럼을 외교적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정당하며, 이 행사에서 중국의 인권 탄압에 대한 비판도 없었다는 점에서 기사의 내용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보니파스 소장이 공개적으로 르 몽드가 그의 반론을 게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이 반론 내용을 잘못된 주소로 발송한 것은 명시하지 않았다”며, 편집국이 반론의 존재를 안 이후 게재했음을 강조했다. 양측의 입장과 함께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해당 기사를 분석하였고, 르 몽드 기사는 국립군사학교전략연구소의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는 점에서 정확성과 진실성에 관한 윤리를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인용한 보고서가 공정성과 불편부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보았고, 이에 대한 국제관계전략연구소의 반론이 3개월 이후에나 게재된 것에 대해 반론권 보장의 원칙은 위반하였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위원회는 ‘부분적으로 성립’으로 최종 의견을 결정하였다.

신청자의 신청에 대해 윤리적 문제 ‘성립’으로 결론을 내린 사례는 다음과 같다. 지난 2021년 10월 27일 씨뉴스(CNews)의 프로그램 《프로들의 시간 2(L'heure des Pros 2)》에서 방송된 대선예비후보 지지율 그래프가 왜곡되어 있다는 문제제기가 신청되었다. 신청자는 해당 프로그램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발표함으로써 사실의 정확성과 진실성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방송화면의 여론조사 결과를 나타낸 두 장의 인포그래픽에서 지지율이 도합 100%가 아닌 103%, 106%로 계산된다. 신청자는 이 수치가 공화당(LR)의 잠재적인 후보가 동시 입후보할 경우를 가정한 것에서 비롯되었으며, 실제 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에서는 동시입후보 가설을 검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씨뉴스 측에 문제 제기된 내용을 고지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 위원회 역시 해당 보도에 대해 분석을 하고, 여론 조사를 실시한 해리스 인터랙티브(Harris Interactive)의 자료와 비교하여 해당 인포그래픽이 왜곡되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위원회는 해당 인포그래픽의 하단 제목으로 제시된 “에릭 제무르 지지율 상승” 역시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위원회는 2021년 12월 4일 회의에서 해당 보도가 정확성과 진실성의 무와 자료를 왜곡하지 않는다는 윤리에 위배된다는 신청자의 주장이 ‘성립’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IV. 우리나라 <언론중재위원회>와의 유사성 및 차이점

프랑스의 저널리즘윤리중재위원회를 우리나라의 언론중재위원회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인다. 첫째, 프랑스 저널리즘윤리중재위원회는 공공의 성격을 가진 중재 기관이기보다는 전문직 협회의 성격이 강하다. 우리의 언론중재위원회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준사법적 기관인 것과는 매우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프랑스 저널리즘윤리중재위원회는 언론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이보다는 저널리즘 윤리를 기준으로 보도의 윤리성을 가늠하는 역할을 한다. 즉, 법의 침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저널리즘 윤리와 도덕적 측면에서 접근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신문윤리위원회의 역할이나 성격과 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프랑스 저널리즘윤리중재위원회의 심의 기준 역시 법률이 아니라 언론 윤리 헌장 등 저널리즘 윤리 규정에 따른다. 따라서, 언론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만 중재 신청이나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16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

셋째, 프랑스 저널리즘윤리중재위원회가 준사법적 공공기관이 아니고, 접수된 신청에 대해 윤리 헌장을 기준으로 접근하여 심의하면서 그 결과로 생산된 결정 역시 법률적 제재나 징계, 처벌의 효력을 갖지 않는다. 이는 위원회가 정부 주도로 설립되는 공공기관이 되는 경우 언론인들의 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검열이 될 것이라며 언론인들이 가장 극렬하게 반대했던 점을 상기한다면 당연한 결과이다.

넷째, 프랑스 저널리즘윤리중재위원회의 심의위원이나 이사회 등 심의를 담당하는 영역에

서 법률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도 우리나라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와의 큰 차이점이다. 물론, 미디어 이용자 파트에 회원으로 가입을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공개된 이사회 명단에서는 법률가를 한 명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위원회에 접수된 문제를 법률적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윤리적 차원에서 다루려는 기관의 성격과도 무관하지 않다. 위원회는 실제 언론 보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언론인, 언론사, 시민이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의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위원이 법률가, 언론인, 언론학자 등으로 구성된 것과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할 수 있다.

종합해볼 때, 프랑스의 저널리즘윤리중재위원회와 우리나라 언론중재위원회가 궁극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올바른 언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언론 활동으로 인한 침해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은 유사하지만 실제 그 접근 방식에서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으로 인한 법익 침해와 그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프랑스의 저널리즘윤리중재위원회는 언론 보도에 대한 윤리적 심의를 통해 언론인들에게는 윤리적 가이드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프랑스 사회에 언론 윤리에 대한 관심과 토론의 장을 여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

참고 문헌

- 1) 최지선 (2020). '언론 신뢰' 되찾으려 언론사·언론인·시민 모인다. <신문과 방송> 2020년 1월호 No. 589.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pp.132-135.
- 2) Cassini, S. (2019. 12. 2). Pourquoi la création d'un conseil de déontologie des médias divise les journalistes. <Le Monde>. URL: https://www.lemonde.fr/economie/article/2019/12/02/la-creation-d-un-conseil-de-deontologie-des-medias-divise-la-profession_6021320_3234.html
- 3) Ducrot (2020. 1. 16). Pourquoi Acrimed ne rejoindra pas le Conseil de déontologie journalistique et de médiation. <acrimed.org>. URL: <https://www.acrimed.org/Pourquoi-Acrimed-ne-rejoindra-pas-le-Conseil-de>
- 4) Hoog, E., Clément-Cuzin, S., et Baudet, C. (2019). Confiance et liberté – Vers la création d'une instance d'autorégulation et de médiation de l'information. <Rapport Public Ministère de la Culture>. URL: <https://www.vie-publique.fr/rapport/38627-instance-dautoregulation-et-de-mediation-de-linformation>
- 5) Reuters Institute (2019). <Digital News Report 2019>. URL: https://reutersinstitute.politics.ox.ac.uk/sites/default/files/2019-06/DNR_2019_FINAL_0.pdf
- 6) Labracherie, J. (2019. 12. 4). Qu'est-ce qu'un conseil de déontologie journalistique? <La Revue des médias d'INA>. URL: <https://larevuedesmedias.ina.fr/conseil-deontologie-journalistique-creationexplications>
- 7) Le Monde avec Reuters (2019. 6. 26). Cédric O réclame un « Conseil de l'ordre des journalistes », faute de quoi « l'Etat s'en chargera ». <Le Monde.fr>. URL: https://www.lemonde.fr/actualite-medias/article/2019/06/26/cedric-o-veut-que-les-medias-luttent-contre-les-fake-news-faute-de-quoi-l-etat-s-en-chargera_5481411_3236.html
- 8) Sirinelli, M. (2014). Autorégulation de l'information : Comment incarner la déontologie ? Rapport public 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URL: <https://www.vie-publique.fr/rapport/33847-autoregulation-de-linformation-com>